

# 비호자치회 선거시행세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구대학교 비호자치회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규정한다.

제2조(선거)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제 2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3조(선거권) 본회의 비호생활관 입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제4조(피선거권)

① 비호자치회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여야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보자 등록에서 당선자 발표 전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임기 시작이전에 당선자에게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선무효로 한다.

1. 학업에 충실하고 학생자치 활동에 열성을 가지며, 품행이 방정하고 본회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통솔력을 겸비한 자
2.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4학기 이상 7학기 미만의 등록을 필하고 재학 중인 자
3.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인 자(F 포함)  
가. 직전학기라 함은 통상적인 학기순으로 해석하여, 1학년 2학기의 직전 학기는 1학년 1학기이고 2학년 1학기의 직전 학기는 1학년 2학기로 보며 이하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선거일 현재 통산 2회 이상 비호생활관 등록을 필한 자로서, 2학년 또는 3학년에 재학 중인 자
5. 당해학기 자치회비를 납부한 자
6. 차기년도 졸업예정자가 아닐 것
7. 당해연도 비호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연임하여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8. 범죄사실이 없는 자 (학교 징계포함.)

② 비호자치회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원서 1부
2. 재학 증명서 1부
3. 성적 증명서(F포함) 1부
3. 공약사항 1부
4. 선거권자 100인 이상의 추천서 1부
5. 투·개표 참관인 명단 1부
6. 자치회비 납입 확인서 1부
7. 비호생활관 거주확인서 1부
8. 사퇴서 1부

③ 위 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선거 공고기간 내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기간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승인 하에 다음의 입후보 자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3학기 이상 7학기 미만의 등록을 필하고 재학 중인 자
2. 전 이수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F포함)
3. 위 1항, 2항 외 제4조의 피선거권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5조(선거방법)

① 비호자치회 회장, 부회장은 본회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2인 1조로 공동입후보 하고**,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추천 시 추천인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일부터 7일 이전에 모든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모든 현직이라 함은 비호자치회 집행부, 비호생활관 호관 동장, 중앙자치기구 집행부, 단과대학 학생회 및 대의원회 집행부, 각 학과 학생회장 및 대의원을 말한다.

###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6조(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제외한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장 대표가 위원장이 되며, 동장 대표가 추천하는 약간 명, 비호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사무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약간 명의 보조요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보조요원은 선거 당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을 부착한다.

#### 제7조(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 작성
3. 선거홍보물 유인물 벽보 작성
4.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 조정
5. 선거장의 질서 유지 및 감독
6. 선거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심사
7.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

#### 제8조(소집 및 의결)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제적 선거관리위원회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적 선거관리위원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상실) 선거관리위원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한다.

1.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원이 각급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3. 특정 후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
4. 선거관리위원장의 판단하에 공정한 중앙 선거관리위원의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 제10조(선거인명부)

- ① 선거인명부는 당해연도 등록을 필한 자로 학적에 따라 작성한다.
- ②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소속대학, 학과, 학번,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선거인명부 작성은 비호생활관 행정실의 협조 하에 작성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당일 선거인명부를 선거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⑤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투표 당일 착오가 발생할 경우 그 선거권자는 투표권을 상실한다.

#### 제11조(입후보자의 자격심사)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공고한다.
- ② 입후보자의 등록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그 입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 제 4 장 선거일정

#### 제12조(선거일정)

- ① 비호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의 선거는 비호자치회칙 제47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일정에 따른다.
- ② 일정공고: 2000년 0월 0일
- ③ 입후보 등록원서 교부기간: 2000년 0월 0일 ~ 동년 0월 0일 0시
- ④ 등록원서 교부장소 및 등록장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 ⑤ 입후보자 등록기간: 2000년 0월 0일 ~ 동년 0월 0일 0시
- ⑥ 입후보자 자격심사: 2000년 0월 0일 0시
- ⑦ 입후보자 기호추첨: 2000년 0월 0일 0시
- ⑧ 입후보자 공고: 2000년 0월 0일
- ⑨ 선거운동기간: 2000년 0월 0일 ~ 동년 0월 0일 0시
- ⑩ 합동유세: 2000년 0월 0일 0시
- ⑪ 투표일시: 2000년 0월 0일 00:00~00:00
- ⑫ 개표일시: 2000년 0월 0일 0시

#### 제13조(참관인)

- ① 입후보자의 등록시 참관인 2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사항과 투표사항을 참관할 수 있다.

- ③ 입후보자 또는 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 권유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투·개표의 중지 및 부정 사실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 ⑤ 각 후보자는 전항의 요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 ⑥ 참관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 5 장 선거운동

제14조(기간) 선거운동은 2000년 0월 0일 ~ 0월 0일 00:00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 ①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②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5개 이하이며, 길이는 10미터, 폭 1미터, 3색 이하로 한다.
- ③ 홍보 유인물은 2종 이내, 규격은 8절지 이내의 3도 이하로 한다.
- ④ 전②항과 전③항은 후보자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고, 후보자간 합의사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 ⑤ 각 입후보자가 전①②③항을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모두 제거한다.

제16조(유세)

- ① 합동유세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일시, 장소에서만 실시한다.
- ② 유세 순서는 매 유세 10분전 추첨으로 한다.
- ③ 각 입후보자 유세시간은 동일하며, 유세 기간은 후보자간 합의를 우선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6 장 금지 및 벌칙사항

제17조(금지) 비호자치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① 금품, 금전의 배포행위
- ② 폭력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대한 불응
- ④ 허위 사실 유포행위
- ⑤ 타후보의 정당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
- ⑥ 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 ⑦ 선거 유세기간 이외의 기간에 선거운동
- ⑧ 기타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위

제18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후보자에게 대하여

1차 경고를 하며, 해당 후보자가 다시 2차 경고를 받을 경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 제 7 장 선거비용

제19조(선거비용)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개인 현수막 5개 이하, 개인 선거 공약 유인물 2종 이하의 사용에 필요한 액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추가되는 비용은 각 후보자간의 합의로 결정하고, 특정 날짜를 정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중재한다.

## 제 8 장 투표

제20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한 투표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전자투표)

① 컴퓨터, 스마트기기를 통한 선거권자의 기본정보로 참여한다.

② 선거권자가 자력으로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투표소 투표)

① 기표는 ㉠표식으로 한다.

②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투표한다.

③ 선거권자는 투표시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하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는 입후보자의 성명과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⑤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회장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견본을 선거일 2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⑦ 선거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재교부 하지 않는다.

제23조(투표소 관리) 투표소 내에는 선거관리위원회원, 참관인, 투표자 이외의 입장을 금한다. 단, 투표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회장이 임명하는 투표사무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투표사무 보조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24조(투표시간) 투표는 당일 00시에 시작하여 00시 00분에 마감하되, 마감시간 경과 전후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자는 투표할 수 있다.

제25조(투표함 봉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될 때 참관인과 함께 봉인을 하여야 하며, 각 투표소 선거관리위원회원과 참관인은 총 투표용지 수와 남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9 장 개표

제26조(개표 및 개표소) 개표는 투표당일 선거가 완료된 시점부터 지정장소에서 실시한다.

제27조(개표시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개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원, 입후보자, 참관인, 언론보도진, 행정실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제28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①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 ②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
- ③ 투표용지 선에 ⊗표식이 있는 경우
- ④ 투표용지 ⊗표식외 타 필기구 낙서를 한 경우
- ⑤ 기표란에 ⊗표식하지 않는 경우

제29조(당선공고)

- ① 개표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득표결과 동일한 경우 재투표 한다.
- ③ 단독 입후보자는 2분의 1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회원은 선거결과 선거 종료 후 24시간 이내 비호생활관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선거 연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기할 수 있다.

## 제 10 장 재선거

제31조(재선거)

-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가 무효로 결정될 때
  2. 단일 후보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3. 당선자가 임기 시작 이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될 때
  4. 재선거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회장이 보궐 또는 궐위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제 11 장 보궐선거

제32조(보궐선거)

- ① 비호학생회장·부회장 중 1인이 궐위된 경우에는 당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회장·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하되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투표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단,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비호자치회에서 지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단일 후보시에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3.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앙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의 서열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궐위된 직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 부 칙

### 제1조(일반관례)

본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2조(성립요건)

본 선거시행세칙은 의결·확정된 날로부터 성립된다.

### 제3조(경과규정)

본 선거시행세칙이 의결·확정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 제4조(세칙변경의 불가)

본 선거시행세칙은 특정 후보자의지지 및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입후보 공고 시점부터 선거가 끝나는 시점(당선의 확정)까지의 변동을 금한다.

### 제5조(시행일)

본 선거시행세칙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선거시행세칙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